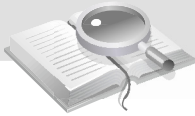


| 정책발표 |



세계무역기구 위생분야(WTO/SPS) 통보문



박헌진, 정자경

식품산업진흥본부 식품정책연구단

▶ SPS 일반현황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는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약자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될 당시, 미국이 각국에 개별적인 협정안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만들어진 협정이다. 즉, SPS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의 약자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한다.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PS협정에 따라 식품의 국제규격 기준이 각국에 강제 적용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각국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내 식품법규에 따라 수입식품을 규제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엔 SPS의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를 국내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국내에 비해 오염물질의 허용치가 높거나 국내에서는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외국산 식품들이 국제 규격임을 내세워 마구 들어올 경우 이를 저지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절실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GATT 체제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전반적인 동향을 알리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1.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현황

1.1. SPS 협정은 SPS조치가 농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

→ SPS 조치는 동·식물 병해충 및 식품·사료의 첨가제,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제도 등

- 적용범위 : 사람,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1.2. SPS위원회는 WTO 일반교역이사회 산하에 설치(SPS협정 제12조 제1항), 매년 3*4 차례 스위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국은 148개국임('05.2.16기준)

1.2.1. SPS위원회의 역할

- 회원국간 검역 및 위생관련 협의 및 협상장려
- 국제기술기구(IPPC, OI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제정하는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사용 장려
-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이용상황 감시를 위한 절차개발

1.2.2. 최근 논의동향

- 2005.8월 현재까지, WTO/SPS위원회는 의사규칙, 동등성규정 이행에 관한 결정문, 일관성지침, 권장통보절차 등 중요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개도국 특별대우 (S&D)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중

※ '05년 회의일정: 32차(3.9~3.10), 33차(6.29~6.30), 34차(10.24). 중요지침 논의를 위해 정례회의 일정을 전후로 2~3일간의 비공식협의를 별도 개최함

2.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주요내용 및 해설

2.1. 구성

2.1.1.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조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서문

- 본문

* 제1조(일반규정)

* 제2조(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제3조(조 화)

* 제4조(동 등 성)

* 제5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제7조(투 명 성)

*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제9조(기술지원)

* 제10조(특별 및 차등대우)

* 제11조(협의 및 분쟁해결)

* 제12조(관 리)

* 제13조(이 행)

* 제14조(최종조항)

- 부속서 1 : 정 의

- 부속서 2 :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 부속서 3 :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

2.2. 주요내용 및 해설

2.2.1. 기본권리 및 의무

-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조치)가 본 협정문과 일치할 경우 동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단, SPS조치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되 과학적 근거주위에 입각하여야 함
- SPS조치는 회원국간 무차별 및 내국민대우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함

2.2.2. 국제기준과의 조화

- 각국의 SPS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에 일치시켜야 함. 단,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할 경우 이보다 높은 보호수준을 도입·유지할 수 있음
- 동물검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지침, 권고와 조화
- 식물검역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기준, 지침, 권고와 조화
- 식품안전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 지침, 권고와 조화
- SPS위원회는 각국의 SPS조치의 조화 진전 상황 감시절차를 개발하도록 함
- 따라서 현행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향후 계속 운영이 가능(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마찰 야기)

2.2.3. 동등성 원칙의 인정

-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인정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수출국은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절차를 수입국에 제공하여야 함

* 위험평가지 고려사항

- ①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 ② 관련가공 및 생산방법
- ③ 관련검사,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④ 특정병균 및 해충의 발생수준
- ⑤ 병해충 비발생지역의 존재
- ⑥ 생태 및 환경조건
- ⑦ 검역 또는 기타 처리사항

*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① 위험평가 결과
- ② 경제적 요소인 병해충 전파로 발생할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손실, 방역 및 박멸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책 관련의 소요 비용
- ③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기타 회원국이 적용하는 SPS조치를 포함하여 입수가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임시 SPS규제를 채택할 수 있으나 적절한 기간내에 SPS규제를 재검토하여야 함

- 특정국의 SPS조치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혹은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한 해당조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하여도 동 조치가 국제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그들의 SPS규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국은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2.2.4. 병해충 안전지역 및 발생이 적은 지역 인정

- 수입국의 SPS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병해충 안전지역 및 발생이 적은 지역을 인정함. 따라서 동 규제의 범위를 국가 및 도서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세분화함.
- 병해충 안전지역 및 발생이 적은 지역 관정은 지리적, 생태학적, 역학적 감시, 위생 및 검역 관리의 효율성 요인에 근거함
- 병해충 비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을 주장하는 수출국은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 수입국이 원할 경우에는 검사, 시험, 기타 관련절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2.5. 투명성 확보

- 회원국은 SPS규제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SPS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규정의 발간 공표 및 적정유예기간 허용 : 채택된 SPS 관련 규정을 발간하여 관심 있는 회원국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 유예기간을 허용함
- 문의기구 설치 : 관심을 가진 회원국의 정당한 질의에 답변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의기구를 설치함

* 관련자료 내역 · 국내의 모든 SPS관련 규정

- ① 국내의 모든 방역 및 검사절차, 생산 및 검역 처리, 농약잔류허용치 및 식품첨가물 승인절차
- ② 위험평가절차, 고려요소 및 적정 SPS보호수준의 판정
- ③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가입사항 및 이에 따른 양자 및 다자간 협정문

- 통보절차 : 국제기준이 없거나 동 기준과 상이한 때 또는 타회원국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미리 사전에 공고하고 WTO사무국을 통해 규정에 포함된 제품, 목적 및 제안된 규정의 요약 등을 타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함. 또한 타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협의와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함.

2.2.6.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확립

- 개별 회원국의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의 사용 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검역, 검사방법 및 절차규제를 협정문에 일치시킴. 즉,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절차, 부당한 검사 및 허가지연,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제한함
- 수입상품에 대해 절차상의 차별적인 부당지연 금지
- 각 절차의 기준처리기간 공표, 신청인의 요구 시 예정 처리기간 통보
- 관련 정보 요구 시 검사 또는 승인절차상 필수적인 정보만을 요청
- 관련 비용 및 관련 시설 기준 등에 대해 국내 상품과 차별 금지
- 관련 소송심사절차 및 공소 후 시정절차 확립

2.2.7. 기술지원

- 개도국에 대한 SPS관련 기술지원
-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등

2.2.8. 개도국 특별대우

- 개도국의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품목에 대한 2년간의 협정의 적용 유예 허용 협정문의 의무 준수를 일부 유예

2.2.9.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 SPS조치 관련 분쟁해결은 GATT 1994 제22조 및 제23조와 WTO의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즉, SPS조치 관련 분쟁도 WTO의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야만 함. 패널에서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 하에서 선정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함

2.2.10. 관리

- 정기적 협의기회 제공을 위해 “SPS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함
 - 회원국간 협의/협상 장려 및 촉진
 - 회원국간 국제기준 사용 장려, 국제제도와 국내제도간의 조화
 -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
 - 국제적인 조화의 진전 상황과 국제기준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개발

-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SPS조치에 대한 국제적 기준 작성
- 시행 3년 후 협정문 운영 및 시행사항을 재검토하고 개정

2.2.11. 이행 및 최종조항

- 지방정부/비정부기구가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시행
- 최빈개도국의 경우 수입에 영향을 주는 SPS 조치에 대하여 WTO 발효후 5년 경과후부터 협정문 적용
- 기타 개도국은 WTO발효후 2년간 협정문 적용을 유예
 - 단, 통보관련 조항은 해당 안됨

<출처 : 농림부 통상협력과 (www.maf.go.kr) >

'07. 5월중 WTO/SPS통보문(I)

시리얼 No.	국가명	통보일	주요내용
G/SPS/GEN/773	WTO	2007. 5. 2.	EU의 동물 부산물 위생규정(안)에 대한 의견 조희
G/SPS/N/ALB/9	알바니아	2007. 5. 3.	터키산 초생추 수입허용
G/SPS/N/CAN/284	캐나다	2007. 5. 1.	Thiacloprid 최대잔류허용치 설정
G/SPS/N/CAN/285	캐나다	2007. 5. 4.	Triclopyr 최대잔류허용치 설정
G/SPS/N/CAN/286	캐나다	2007. 5. 4.	Novaluron 최대잔류허용치 설정
G/SPS/N/HKG/25	홍콩	2007. 5. 2.	식품중 보존제 규정 개정 - 정의, 종류, 식품분류체계 도입
G/SPS/N/KOR/236	한국	2007. 5. 2.	농산물중 농약잔류치 설정 및 개정 - 후추, 된장, 고추장 중 Aflatoxin B1 기준 및 성분규격 설정 -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데메틸홍데나필) 불검출기준 설정
G/SPS/N/KOR/237	한국	2007. 5. 2.	수입식품 검사지침 개정 - 조건부 신고 수리 제외 규정 등
G/SPS/N/KOR/238	한국	2007. 5. 2.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규정 개정
G/SPS/N/USA/1538	미국	2007. 5. 1.	식품정보 부식제로 이산화탄소 사용 승인 요청 알림
G/SPS/N/USA/1539	미국	2007. 5. 3.	Vitamin E 잔류허용조건 예외 규정 개정
G/SPS/N/HKG/24	홍콩	2007. 5. 1.	계란 수입허가서 및 증명서 요구
G/SPS/N/KOR/234	한국	2007. 5. 1.	호주산 망고 수입위생조건 제정
G/SPS/N/KOR/235	한국	2007. 5. 1.	네덜란드산 안스름 수입위생조건 제정

시리얼 No.	국가명	통보일	주요내용
G/SPS/N/THA/152/Rev.1/Corr.1	태국	2007. 5. 1.	G/SPS/N/THA/152/Rev.1 정정
G/SPS/N/THA/153/Rev.1/Corr.1	태국	2007. 5. 1.	G/SPS/N/THA/153/Rev.1 정정
G/SPS/N/USA/1535	미국	2007. 5. 1.	fluroxypyr MHE 잔류허용치 설정
G/SPS/N/USA/1536	미국	2007. 5. 1.	dimethenamid 잔류허용치 설정
G/SPS/N/USA/1537	미국	2007. 5. 1.	myclobutanil 잔류허용치 설정

'07. 5월중 WTO/SPS통보문(Ⅱ)

시리얼 No.	국가명	통보일	주요내용
G/SPS/N/BHR/8	바레인	2007. 5. 11.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지침
G/SPS/N/CAN/287	캐나다	2007. 5. 9.	수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치 설정
G/SPS/N/KOR/239	한국	2007. 5. 9.	식용유 중 Benzo(a)pyrene 규격 설정
G/SPS/N/KOR/240	한국	2007. 5. 9.	식용색소 적색2호(Amaranth) 규격 개정
G/SPS/N/PHL/114	필리핀	2007. 5. 11.	미국 West Virginia주산 가금류 등 잠정 수입금지(H ₅ N ₂)
G/SPS/N/PHL/115	필리핀	2007. 5. 11.	방글라데시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 잠정 수입금지
G/SPS/N/TPKM/104	대만	2007. 5. 11.	식품첨가제(Thaumatococcus) 범위 및 규격 개정
G/SPS/N/USA/1549	미국	2007. 5. 11.	항균제(propiconazole)의 잔류허용치 한시적 상향 조정(1ppm→2ppm) - 복숭아의 저장기간 연장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목적
G/SPS/N/USA/1550	미국	2007. 5. 11.	토마토에 <i>Bacillus thuringiensis</i> subsp <i>Kurstaki</i> 사용 한시적 승인
G/SPS/GEN/774	WTO	2007. 5. 8.	표준무역개발기금(STDF) 이행 보고서
G/SPS/N/EEC/306	유럽연합	2007. 5. 8.	제3국의 살모넬라 관리 프로그램 승인 결정안
G/SPS/N/EEC/72/Add.2	유럽연합	2007. 5. 4.	EU의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규정 이행
G/SPS/N/IND/40/Add.1	인도	2007. 5. 4.	식품첨가제 사용, 오염물질 잔류허용치, 표시조건 규정
G/SPS/N/IND/44/Add.1	인도	2007. 5. 4.	유아용 식품 및 유아용 대용유 규정
G/SPS/N/SGP/35	싱가포르	2007. 5. 7.	염적(salted) 보존 처리된 계란 수입조건 부여
G/SPS/N/THA/161	태국	2007. 5. 7.	수의약품 사용 규정
G/SPS/N/USA/1368/Add.1	미국	2007. 5. 8.	tetraconazole 잔류허용치 설정
G/SPS/N/USA/1540	미국	2007. 5. 7.	항균제(boscalid) 잔류허용치 설정
G/SPS/N/USA/1541	미국	2007. 5. 7.	Plant Incorporated Protectormts(PIPs) 생산규정 개정
G/SPS/N/USA/1542	미국	2007. 5. 7.	농약(Calcium lactate) 신규 사용 승인 검토
G/SPS/N/USA/1543	미국	2007. 5. 7.	농약(dikegulac sodium) 재등록 적합성 결정
G/SPS/N/USA/1544	미국	2007. 5. 8.	포유류 생식선 분비호르몬(GnRH)에 대한 실험실 사용 허가
G/SPS/N/USA/1545	미국	2007. 5. 8.	농약(Trichoderma, Linalool) 등록 검토
G/SPS/N/USA/1546	미국	2007. 5. 8.	농약(Mecoprop-p) 위험평가
G/SPS/N/USA/1547	미국	2007. 5. 8.	농약평가를 위한 데이터 요구(국내, 기관간)
G/SPS/N/USA/1548	미국	2007. 5. 8.	농약(Forme tanate Hydrochloride) 재등록 적합성 결정

'07. 5월중 WTO/SPS통보문(Ⅲ)

시리얼 No.	국가명	통보일	주요내용
G/SPS/GEN/775	WTO	2007. 5. 15.	SPS 협정 이행과 Codex · IPPC · OIE 활동에 관한 보고서
G/SPS/N/AUS/212	호주	2007. 5. 18.	대만산 염적처리 오리알 수입검역정책 검토서
G/SPS/N/BRA/297/Add.1	브라질	2007. 5. 14.	G/SPS/N/BRA/297 통보내용(감자재배시 Paraquat 사용) 채택
G/SPS/N/BRA/298/Add.1	브라질	2007. 5. 14.	G/SPS/N/BRA/298 통보내용(사탕수수 재배시 Imazapic 사용) 채택
G/SPS/N/BRA/302/Add.1	브라질	2007. 5. 18.	G/SPS/N/BRA/302 통보내용(보리 재배시 Azoxystrobin 사용) 채택
G/SPS/N/BRA/303/Add.1	브라질	2007. 5. 14.	G/SPS/N/BRA/303 통보내용(대두재배시 Carfentrazone-ethyl 사용)채택
G/SPS/N/BRA/304/Add.1	브라질	2007. 5. 18.	G/SPS/N/BRA/304 통보내용(쌀재배시 Imazapyr 사용)채택
G/SPS/N/BRA/305/Add.1	브라질	2007. 5. 18.	G/SPS/N/BRA/305 통보내용(포도재배시 Zeta-cypermethrin 사용)채택
G/SPS/N/BRA/307/Add.1	브라질	2007. 5. 18.	G/SPS/N/BRA/307 통보내용(커피재배시 Endosulfan 사용) 채택
G/SPS/N/BRA/308/Add.1	브라질	2007. 5. 18.	G/SPS/N/BRA/308 통보내용(사과재배시 Bacillus thuringiensis 사용) 채택
G/SPS/N/BRA/309/Add.1	브라질	2007. 5. 14.	G/SPS/N/BRA/309 통보내용(옥수수재배시 Bifenthrin 사용) 채택
G/SPS/N/BRA/314	브라질	2007. 5. 14.	설탕가공시 tannin 사용 연장
G/SPS/N/OMN/15	오만	2007. 5. 18.	가나산 가금류 및 생산물 수입 긴급 금지
G/SPS/W/209	WTO	2007. 5. 15.	국제기준 조화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안)
G/SPS/N/BRA/235/Add.1	브라질	2007. 4. 27.	G/SPS/N/BRA/235 통보내용(오제스키 근절프로그램)채택
G/SPS/N/CHL/253	칠레	2007. 4. 25.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치
G/SPS/N/CHL/255	칠레	2007. 4. 25.	식물가공품 분류표 개정
G/SPS/N/CHL/256	칠레	2007. 4. 25.	EU산 키위 번식재(reproductive material) 수입조건
G/SPS/N/USA/1537	미국	2007. 5. 1.	EU산 올리브 번식재(reproductive material) 수입조건
G/SPS/N/CHL/257	칠레	2007. 4. 25.	시험관 조직배양 식물수입 조건
G/SPS/N/CHL/258	칠레	2007. 4. 25.	페루산 감자 줄기 수입조건
G/SPS/N/CHL/259	칠레	2007. 4. 25.	목재포장재 수입조건
G/SPS/N/139	콜롬비아	2007. 5. 3.	수생동물에 대한 약품잔류기준 설정
G/SPS/N/ECU/16	에콰도르	2007. 5. 1.	미국 서부 버지니아주산 가금류 및 생산물 긴급 수입제한
G/SPS/N/ECU/17	에콰도르	2007. 5. 1.	브라질 Rio Grande do sul 산 가금류 및 생산물 수입제한 해제
G/SPS/N/ECU/18	에콰도르	2007. 5. 3.	미국 캘리포니아 텔라웨어 등 가금류 및 생산물 긴급 수입제한